

이용 계약서¹⁾²⁾

_____ (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서비스 지원 조건, 절차, 중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며, 본 시설 이용자 _____ (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기본정신)

“시설”은 「장애인복지법」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³⁾를 준수한다.

제2조(실무원칙)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조」에 따라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계약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한다.

제3조(개별지원 계획수립)

- ① “시설”은 이용자의 개별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별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1. 초기 사정(이용 계약 시): “[서식] 이용 희망자 Intake”를 작성한다.
 2. 개별서비스 지원 계획: 신규 이용자 및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년 수립한다.
- ② 개별서비스 지원 계획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립하고, “이용자”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되 “보호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 또는 “시설장”의 동의를 받아 수립할 수 있다.
- ③ “시설”은 개별서비스 지원 계획을 위해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적인 인적 사항
 2. 의사소통 방법
 3. 필요한 일상생활 지원 내용과 숙소의 형태
 4. 필요한 교육, 훈련과 거주 기간
 5.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망
 6. 행동특성(특정 행동의 내용과 응대 방법)
 7. 소득
 8. 장애 관련 필요 장비
 9. 신체적, 정신적, 의료적 지원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기준 5. 서비스 결정, 서비스 제공 조건 및 이용 중단

2) 본 시설의 당초 계약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관련법규를 보완 적용하여 작성

3) 보건복지부,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77호)」

10. 필요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 ④ “이용자”와 이용자의 “보호자” 혹은 “후견인”은 개별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4조(개별지원서비스 지원)

“시설”은 다음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포함한 개별서비스를 지원한다.

- ① 능력개발: 개인적인 발전, 교육과 직업, 지역사회 연계와 네트워크
- ② 일상생활: 여가, 관계, 사생활, 식사
- ③ 개별지원: 개별지원, 건강관리, 약물관리, 노화와 사망
- ④ 환경: 침실, 보조기, 기타 설비
- ⑤ 기타 시설의 특화 서비스 기록

제5조(제한정책)

- ① “시설”은 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법률 및 의료 전문인의 의견을 참조한다.

- ③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계약서 제3조제3항제6호 위험 요소(도전행동 같은 이용자와 관련한 위험요소)”의 위험 요소가 발생할 경우

2. “이용자”가 본인 또는 타인을 가해(加害)하거나 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전항의 “이용자가 본인 또는 타인을 가해하거나 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 또는 타인을 가해하여 전치 1주 이상의 손상·질병·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 본인 또는 타인을 가해하여 전치 1주 이상의 손상·질병·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시설장이 판단한 경우

- 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즉시 개입: 도전행동에 개입하는 교육을 받은 직원, 시설장이 사전에 지명한 전담 직원이 즉시 개입하여 신체를 제압하거나 격리한다. 해당 직원이 없을 때는 다른 직원이 우선 개입하고 사후 보고한다.

2. 일시 격리: 가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시설장이 판단할 때, 가해가 지속된다고 시설장이 판단할 때, “이용자의 보호자”의 주거지에서 일시(한 달 이내) 거주할 수 있다.

3. 이용 종료: 가해로 인해 시설 이용이 어렵다고 시설장이 판단할 때, 이용을 종료한다.

4. 교육: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한다.

- ⑥ 제한 정책은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전항의 ‘즉시 개입’은 도전행동에 개입하는 교육을 받은 직원, 시설장이 사전에 지명한 전담 직원이 즉시 개입하여 신체를 제압하거나 격리한다. 해당 직원이 없을 때는 다른 직원

- 이 우선 개입하고 사후 보고한다.
2. 전호 ‘즉시 개입’ 외의 조치는 ‘사례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3. 결정된 조치는 “이용자”와 “후견인”과 “보호자”에게 즉시, 문서로 알린다.
 4. “이용자”와 “후견인”과 “보호자”는 결정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는 반드시 문서로 기록하고 보관한다.
 - ⑦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운영규정_신체적 개입 지침”을 따르며, 시설장은 모든 직원이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교육한다.

제6조(비용)

-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복지법」 제80조에 따라 시설 이용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② 시설 이용의 ‘본인부담금’은 월 원(W) 으로 한다.
- ③ “시설”은 ②항의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때는 문서 또는 사전 합의한 방법으로 청구하며, 미성년의 경우 “시설장” 또는 “시설장의 위임을 받은 업무담당자”가 대행한다.
- ④ “시설”은 ②항의 ‘본인부담금’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⑤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③항의 비용을 “시설”이 정한 지정계좌로 이용월 기준 전월 5일 전에 납부한다.
- ⑥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시설은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초과지급된 ‘본인부담금’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7일 이내에 지급한다.
- ⑦ “이용자” 혹은 “보호자”는 ②항의 ‘본인부담금’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⑧ ②항의 ‘본인부담금’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개인 활동(살림, 학습, 신앙, 여가, 취미, 여행, 사교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
 2. 이용자의 개별서비스 지원 계획에 따른 지역사회 기관과 그 이용 비용

제7조(이용자의 권리)

- ① “이용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조4)와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⁵⁾를 “시설”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이용자”는 본인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선택·통제하며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권리가 있다.
- ③ “이용자”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으로 살 권리가 있다.
- ④ “이용자”는 위 ①~③항의 권리를 포함하는 ‘개별서비스 지원’ 계획과 지원의 전 과정에 당사자로서 참여할 권리가 있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5) 보건복지부,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77호)」

제8조(이용자의 책임)

- ① “이용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조」와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시설”의 서비스에 당사자로서 참여·요청·이의제기 할 책임이 있다.
- ② “보호자(후견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조」와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시설”의 서비스에 보호자(후견인)로서 참여·요청·이의제기 할 책임이 있다.
- ③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를 존중하며, 시설의 정책과 사회의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 ④ “이용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⑤ “보호자(후견인)”은 위 ④항에 보호자(후견인)로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시설 외부의 서비스)

- ① “이용자”는 지역주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설 외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시설”은 이용자가 지역주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설 외부의 서비스를 적극 지원한다.
- ③ 시설 외부의 서비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 복지 수단: 공간과 시설(미용실·시장·옷가게·커피숍·극장·도서관·학원·학교·직장·종교기관·자취하숙집 등), 제도, 제품, 문화
 2. 중요한 사람들과 교류: 부모형제·친구·이웃·회원·교우·동료 등의 집과 거처에서 교류

제10조(이용자의 거주 공간)

- ① 이용자가 거주할 공간은 다음과 같다.
 1. 이용 계약 시 “이용자”의 거주 공간은 _____ 시설 내 이다.
- ② 이용자의 거주 공간이 변경될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이용자”가 거주 공간 변경을 선택·통제한다.
 - 2 “시설”은 위 1호 이용자의 결정을 존중한다.
 3. 위 1~2호에서 불구하고 시설과 다른 이용자의 형편에 따라 “이용자”와 “시설”이 협의할 수 있다.

제11조(계약 체결)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이 포함된 계약서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제12조(이용 중단)

- ① 시설 이용 중단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이용 중단을 앞둔 이용자와의 이용 중단 관련 상담
 2. 이용 중단 적격성 여부 검토
 3. 이용 중단 준비 지원

4. 이용 중단 후 기본적인 사후 관리

제13조(시설 이용의 위험요소)

①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따르는 위험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내 일상생활의 위험요소: 청소·세탁·조리·식사·샤워·이동·휴식 중의 안전사고, 시설 화재, 자연재해
2. 시설 내 단체생활의 위험요소: 다른 이용자로부터 받는 위험요소, 단체생활의 불편과 위험, 집단 감염이나 전염
3. 시설 외부 서비스 이용의 위험: 외부 이동과 서비스 지원 중의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② “시설”은 시설 이용의 위험요소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한다.

1. 사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보험에 가입한다.
 - 가. 화재보험료(대인대물) 및 상해보험료, 의료재활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한다.
 - 나. 장애인복지시설종합보험(삼성화재_서민금융진흥원지원)에 가입한다.
 - 다. 종사자상해보험(정부지원) 및 종사자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한다.
2. 사고 예방 및 대응 지침과 관련 물품을 갖추고 교육한다.
 - 가. 사고 예방 및 대응 지침: 정기 교육 및 시설 내 게시판 항시 게시.
 - 나. 사고 예방 및 대응 교육: 화재 예방과 대피 훈련, 식중독예방교육, 성교육 등 기타 이용자 집합 및 개별 교육.

③ “시설”은 ‘위험요소’를 이유로 이용자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1. “시설장”은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거주·요양·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할 의무가 있다.
2. “시설”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에 따라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에의 자유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준수한다.

④ 위 ③항 각호에 근거하여, “이용자(보호자)”는 위험을 이유로 이용자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제한할 수 없으며, “시설”의 정책과 서비스 지원을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이용료의 별도 산정)

- ① 이용자 중 시설 이용이 불규칙적인 이용자 또는 장기간 부재자(입원환자 포함)의 경우 이용횟수 및 해당 이용자에게 대한 시설의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이용료를 별도로 책정 할 수 있다.
- ② 이용료 별도 산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적용하기로 하며 사전에 고시된 시설 이용료 기준금액을 우선 적용한다.
- ③ 시설 이용 중 이용료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익월 말일 이전에 정산 환급하도록 한다.

